

대구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나3202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암

담당변호사 곽동훈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명호

변론 종결 2021. 1. 14.

판결 선고 2021. 2. 4.

제 1 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0. 4. 선고 2018가단122080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7. 8. 31. 체결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자동차에 관하여 대구 차량등록사업소 2017. 8. 31.자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소외 회사가 2017. 8. 31.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채권자취소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그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40063 판결, 대법원 2015.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소외 회사 사이의 대출계약을 인수하고 그 잔존 대출금 184,848,323원을 변제한 사실, 소외 회사가 I 조합(이하 'T'이라 한다)과 체결한 대출계약(인수 당시 잔존 대출금은 644,049,956원)을 인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8. 31. 소외 회사에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제1심증인 F,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843,120,375원(= 23대763,239,506원 + 3대 79,880,869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피고가 H에 변제하거나 I로부터 인수한 금액 및 소외 회사에 송금한 총 금액이 853,898,279원(= H에 대한 변제금액 184,848,323원 + I 잔존 대출금 644,049,956원 + 소외 회사에 송금한 금액 25,000,000원)에 이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BK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인 27,000,000원을 합하면 전체 금액이 880,898,279원 상당으로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매매대금이 부당하게 염가로 책정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2 소외 회사가 매매대금의 대부분인 828,898,279원(= H에 대한 변제금액 184,848,323원 + I 잔존 대출금 644,049,956원)을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점, 3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L은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으나,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H과 I 이 이 사건 각 자동차가 경매로 매각되면 시가대로 평가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위 각 차량을 인수하여 줄 것을 BL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자동차가 소외회사의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하더라도(원고의 2019. 5. 28.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자동차 이외에 직원들 업무용 차량 15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각 자동차가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매각한 것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H, I, BK에게 우선 변제할 목적으로 통정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또한 이는 특정 채권자가 피고를 통해 소외 회사와 통모하여 채권을 변제받은 사안이므로, 이 사건 각 자동차가 소외회사의 유일한 재산인지 여부나 그 매매가액이 시가 상당액으로 매매되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H과 I 이 이 사건 각 자동차가 경매로 매각되면시가대로 평가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위 각 차량을 인수하여 줄 것을 BL에게 요청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와 피고가 H과 I 에 우선 변제할 목적으로 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 피고, BK 사이에 2017. 8. 29.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매각시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매매대금 중 I 과 H의 대출금은 각 승계하고 남은 잔액 금 52,000,000원에 대하여 25,000,000원은 소외 회사에 지급하고, 금 27,000,000원은 BK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를 BK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소외 회사가 BK에게 우선 변제를 약속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포함한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이유 없다.

4) 원고들은 또한, 체당금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각 자동차로부터 전액 변제받게 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일반채권자가 소외 회사의 일반재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축소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에서 2017. 8. 26.을 퇴직일로 한 근로자들의 최종 1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 합계가 24,997,390원인 사실(원고들은 소외 회사는 BM 주식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므로 BM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도 소외 회사에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BM 주식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이 사건 각 자동차를 경매로 매각할때보다 일반채권자인 원고들의 배당액이 적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수연, 판사 김낙형, 판사 정석원

[별 지]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J
1. 차 명	솔라티(SOLATI)
1. 최초 등록일	2016-01-13
1. 년 식	2015
1. 원 동 기 형 식	D4CB
1. 형식 승인 번호	A08-1-00102-0019-2215
1. 차 대 번 호	K
1. 사 용 본 거 지	대구 북구 L, 2층
1. 최종소유자	주식회사 C.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M
1. 차 명	솔라티(SOLATI)
1. 최초 등록일	2016-02-19
1. 년 식	2016
1. 원 동 기 형 식	D4CB
1. 형식 승인 번호	A08-1-00102-0031-2215
1. 차 대 번 호	N
1. 사 용 본 거 지	대구 북구 L, 2층
1. 최종소유자	주식회사 C.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O
1. 차 명	솔라티(SOLATI)
1. 최초 등록일	2016-02-19
1. 년 식	2016
1. 원 동 기 형 식	D4CB
1. 형식 승인 번호	A08-1-00102-0031-2215
1. 차 대 번 호	P
1. 사 용 본 거 지	대구 북구 L, 2층
1. 최종소유자	주식회사 C.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Q
1. 차 명	솔라티(SOLATI)
1. 최초 등록일	2016-02-22
1. 년 식	2016
1. 원 동 기 형 식	D4CB
1. 형식 승인 번호	A08-1-00102-0031-2215
1. 차 대 번 호	R
1. 사 용 본 거 지	대구 북구 L, 2층
1. 최종소유자	주식회사 C.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S
1. 차 명	솔라티(SOLATI)
1. 최초 등록일	2016-02-29
1. 년 식	2016
1. 원 동 기 형 식	D4CB
1. 형식 승인 번호	A08-1-00102-0031-2215
1. 차 대 번 호	T
1. 사 용 본 거 지	대구 북구 L, 2층
1. 최종소유자	주식회사 C.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U
1. 차 명	솔라티(SOLATI)
1. 최초 등록일	2016-02-29
1. 년 식	2016
1. 원 동 기 형 식	D4CB
1. 형식 승인 번호	A08-1-00102-0031-2215
1. 차 대 번 호	V
1. 사 용 본 거 지	대구 북구 L, 2층
1. 최종소유자	주식회사 C.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W
1. 차 명	솔라티(SOLATI)
1. 최초 등록일	2016-02-29
1. 년 식	2016
1. 원 동 기 형 식	D4CB
1. 형식 승인 번호	A08-1-00102-0031-2215
1. 차 대 번 호	X
1. 사 용 본 거 지	대구 북구 L, 2층
1. 최종소유자	주식회사 C.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Y
1. 차 명	솔라티(SOLATI)
1. 최 초 등 록 일	2016-03-02
1. 년 식	2016
1. 원 동 기 형 식	D4CB
1. 형식 승인 번호	A08-1-00102-0031-2215
1. 차 대 번 호	Z
1. 사 용 본 거 지	대구 북구 L, 2층
1. 최종소유자	주식회사 C.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AA
1. 차 명	솔라티(SOLATI)
1. 최 초 등 록 일	2016-03-02
1. 년 식	2016
1. 원 동 기 형 식	D4CB
1. 형식 승인 번호	A08-1-00102-0031-2215
1. 차 대 번 호	AB
1. 사 용 본 거 지	대구 북구 L, 2층
1. 최종소유자	주식회사 C.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AC
1. 차 명	솔라티(SOLATI)
1. 최초 등록일	2016-03-02
1. 년 식	2016
1. 원 동 기 형 식	D4CB
1. 형식 승인 번호	A08-1-00102-0031-2215
1. 차 대 번 호	AD
1. 사 용 본 거 지	대구 북구 L, 2층
1. 최종소유자	주식회사 C.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AE
1. 차 명	솔라티(SOLATI)
1. 최 초 등 록 일	2016-03-02
1. 년 식	2016
1. 원 동 기 형 식	D4CB
1. 형식 승인 번호	A08-1-00102-0031-2215
1. 차 대 번 호	AF
1. 사 용 본 거 지	대구 북구 L, 2층
1. 최종소유자	주식회사 C.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AG
1. 차 명	솔라티(SOLATI)
1. 최초 등록일	2016-03-02
1. 년 식	2016
1. 원 동 기 형 식	D4CB
1. 형식 승인 번호	A08-1-00102-0031-2215
1. 차 대 번 호	AH
1. 사 용 본 거 지	대구 북구 L, 2층
1. 최종소유자	주식회사 C.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AI
1. 차 명	솔라티(SOLATI)
1. 최 초 등 록 일	2016-03-02
1. 년 식	2016
1. 원 동 기 형 식	D4CB
1. 형식 승인 번호	A08-1-00102-0031-2215
1. 차 대 번 호	AJ
1. 사 용 본 거 지	대구 북구 L, 2층
1. 최종소유자	주식회사 C.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AK
1. 차 명	솔라티(SOLATI)
1. 최 초 등 록 일	2016-03-02
1. 년 식	2016
1. 원 동 기 형 식	D4CB
1. 형식 승인 번호	A08-1-00102-0031-2215
1. 차 대 번 호	AL
1. 사 용 본 거 지	대구 북구 L, 2층
1. 최종소유자	주식회사 C.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AM
1. 차 명	솔라티(SOLATI)
1. 최초 등록일	2016-03-02
1. 년 식	2016
1. 원 동 기 형 식	D4CB
1. 형식 승인 번호	A08-1-00102-0031-2215
1. 차 대 번 호	AN
1. 사 용 본 거 지	대구 북구 L, 2층
1. 최종소유자	주식회사 C.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AO
1. 차 명	솔라티(SOLATI)
1. 최초 등록일	2016-03-02
1. 년 식	2016
1. 원 동 기 형 식	D4CB
1. 형식 승인 번호	A08-1-00102-0031-2215
1. 차 대 번 호	AP
1. 사 용 본 거 지	대구 북구 L, 2층
1. 최종소유자	주식회사 C.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AQ
1. 차 명	솔라티(SOLATI)
1. 최초 등록일	2016-04-11
1. 년 식	2016
1. 원 동 기 형 식	D4CB
1. 형식 승인 번호	A08-1-00102-0031-2215
1. 차 대 번 호	AR
1. 사 용 본 거 지	대구 북구 L, 2층
1. 최종소유자	주식회사 C.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AS
1. 차 명	솔라티(SOLATI)
1. 최초 등록일	2016-04-11
1. 년 식	2016
1. 원 동 기 형 식	D4CB
1. 형식 승인 번호	A08-1-00102-0031-2215
1. 차 대 번 호	AT
1. 사 용 본 거 지	대구 북구 L, 2층
1. 최종소유자	주식회사 C.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AU
1. 차 명	솔라티(SOLATI)
1. 최초 등록일	2016-05-02
1. 년 식	2016
1. 원 동 기 형 식	D4CB
1. 형식 승인 번호	A08-1-00102-0031-2215
1. 차 대 번 호	AV
1. 사 용 본 거 지	대구 북구 L, 2층
1. 최종소유자	주식회사 C.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AW
1. 차 명	솔라티(SOLATI)
1. 최초 등록일	2016-01-13
1. 년 식	2015
1. 원 동 기 형 식	D4CB
1. 형식 승인 번호	A08-1-00102-0021-2215
1. 차 대 번 호	AX
1. 사 용 본 거 지	대구 북구 L, 2층
1. 최종소유자	주식회사 C.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AY
1. 차 명	솔라티(SOLATI)
1. 최초 등록일	2016-06-09
1. 년 식	2016
1. 원 동 기 형 식	D4CB
1. 형식 승인 번호	A08-1-00102-0031-2215
1. 차 대 번 호	AZ
1. 사 용 본 거 지	대구 북구 L, 2층
1. 최종소유자	주식회사 C.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BA
1. 차 명	솔라티(SOLATI)
1. 최초 등록일	2017-02-14
1. 년 식	2016
1. 원 동 기 형 식	D4CB
1. 형식 승인 번호	A08-1-00102-0031-2215
1. 차 대 번 호	BB
1. 사 용 본 거 지	대구 북구 L, 2층
1. 최종소유자	주식회사 C.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BC
1. 차 명	솔라티(SOLATI)
1. 최초 등록일	2017-02-14
1. 년 식	2016
1. 원 동 기 형 식	D4CB
1. 형식 승인 번호	A08-1-00102-0031-2215
1. 차 대 번 호	BD
1. 사 용 본 거 지	대구 북구 L, 2층
1. 최종소유자	주식회사 C.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BE
1. 차 명	솔라티(SOLATI)
1. 최초 등록일	2017-02-14
1. 년 식	2016
1. 원 동 기 형 식	D4CB
1. 형식 승인 번호	A08-1-00102-0031-2215
1. 차 대 번 호	BF
1. 사 용 본 거 지	대구 북구 L, 2층
1. 최종소유자	주식회사 C.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BG
1. 차 명	솔라티(SOLATI)
1. 최초 등록일	2017-02-14
1. 년 식	2016
1. 원 동 기 형 식	D4CB
1. 형식 승인 번호	A08-1-00102-0031-2215
1. 차 대 번 호	BH
1. 사 용 본 거 지	대구 북구 L, 2층
1. 최종소유자	주식회사 C.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BI
1. 차 명	솔라티(SOLATI)
1. 최초 등록일	2017-02-14
1. 년 식	2016
1. 원 동 기 형 식	D4CB
1. 형식 승인 번호	A08-1-00102-0031-2215
1. 차 대 번 호	BJ
1. 사 용 본 거 지	대구 북구 L, 2층
1. 최종소유자	주식회사 C. 끝